

현재 공개 자료에서 보이는 반응은 학생·학부모의 체감 사례보다 교사·교원단체·교육청 준비 상황에 대한 반응이 훨씬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는 아직 시행 초기라 전국적 실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법·교육부 계획·교원단체 반응을 통해 예상되는 현장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현장 반응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누가 이 일을 실제로 할 것인지, 그 사람에게 시간·권한·전문성·보호가 주어지는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통합지원’이 아니라 ‘통합업무 전가’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1. 현재 확인되는 학교 현장 반응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2026년 3월부터 학교별로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교내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절차 중복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교육부 공식 설명의 핵심은 “그동안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학교](#))

문제는 바로 이 “함께 논의한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다르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학생을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누군가는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육청·복지기관·Wee센터·병원과 연계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결국 담임, 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에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불분명한 계획과 교사 업무 가중을 지적했다는 반응이 확인됩니다. ([다음](#))

2. 교사 집단에서 나온 구체적 반응

현재 가장 강하게 확인되는 반응은 업무 증가 우려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는 54.2%에 그쳤고, 응답자의 98.6%가 업무 증가를 예상했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4.4%에 달했습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법의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 현장 작동 방식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교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하나 더 생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구조입니다.

-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다.
- 통합지원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 회의를 열어야 한다.
-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학부모에게 설명해야 한다.
-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한다.
-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교사 업무에 얹히면, 교사는 학생을 더 잘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기록하고, 분류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북 지역 보도에서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업무담당자 교사” 단계를 삭제하고, 교감이 각 부서를 직접 지휘하는 직통 체제로 바꾸며, 기존 담당자를 책임 없는 간사로 두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핵심은 교사를 의사결정권 없는 지원 인력으로 두고 실제 판단과 책임은 관리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도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심리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즉 교사 집단의 핵심 반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학생을 돕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통합 사례관리, 외부기관 연계, 학부모 대응, 기록과 사후관리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담교사 집단에서 예상되거나 확인되는 반응

전문상담교사 쪽에서는 조금 다른 긴장이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심리·정서 지원과 상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담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육부도 위(Wee)클래스 상담, 심리·정서 지원,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합지원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상담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성 인정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연계·행정 처리 업무 증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직을 통한 전문상담교사 임용 계획을 비판하면서,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검증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며, 상담은 단순한 공감·경청·훈계가 아니라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심리적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

이 반응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보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커질수록 상담교사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를 전문상담 주체로 세우지 않고, 단순히 “문제학생 처리, 검사 결과 관리, 외부기관 연계, 민원 완충” 역할로 쓰면 상담교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교사들의 우려는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성은 인정받는가?”

“상담 내용의 비밀은 보호되는가?”

“상담 기록이 통합지원 행정자료로 넘어가는가?”

“위기 판단과 의료기관 연계에서 상담교사의 전문 의견은 존중되는가?”

“학부모 민원과 학교 관리자 책임이 상담교사에게 떠넘겨지는가?”

“상담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체계의 행정 노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학교상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교사를 단순 연계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내면·관계·학교생활 회복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하는 독립적 전문 주체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교사 집단은 누구인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한 집단이 아니라, 학생지원 업무의 최전선에 놓이는 교사 집단 전체입니다. 다만 영향의 강도와 성격은 다릅니다.

1) 담임교사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의 변화와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담임이기 때문입니다.

담임은 다음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학생의 출결 변화, 수업 태도, 또래관계, 정서적 흔들림, 가정 문제 의심 징후를 관찰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 논의 절차에 올린다.

보호자와 연락한다.

지원 이후 학생의 변화를 계속 확인한다.

상담·출결·성적 변화 등을 학교나 센터와 공유한다.

문제는 담임이 치료자도 아니고 사례관리 전문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임은 학생의 생활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법이 이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담임은 “발견자”를 넘어 “사례관리 책임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업무 담당 교사 또는 부장교사

현장에서 가장 큰 행정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학교는 결국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가 생기면 그 교사는 회의, 자료 취합, 기록, 공문, 교육청 보고, 외부기관 연계, 모니터링 업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 지역 보도에서도 이미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 항목이 들어가고, 담당자에게 보직교사를 권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혼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이 집단은 제도 취지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업무 폭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상담교사

상담교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하게 소모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상담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체로 세워지면 제도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상담교사가 검사 결과 처리, 위기 학생 분류, Wee센터·병원 연계, 학부모 민원 대응, 통합지원 행정자료 작성에 묶이면 상담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습니다.

4) 보건교사·특수교사·교육복지사

이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건강, 복지, 특수교육, 심리·정서, 학습, 진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정신건강·위기 징후와 관련된 초기 대응에, 특수교사는 경계선 지능이나 특수교육 필요성 논의에, 교육복지사는 가정·경제·돌봄 문제 연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의 역할 경계가 불분명하면, 협업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가 됩니다.

5.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어려움이 더 빨리 발견되고, 여러 지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학생은 다음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심리·정서, 복지, 진로, 학교폭력, 학업중단 위험 등이 따로따로 다뤄지지 않고 한 학생의 문제로 통합적으로 논의된다.

담임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학교 안 여러 구성원이 함께 살펴본다.

필요하면 Wee클래스, 교육복지, 기초학력지원, 진로상담, 외부기관,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결된다.

한 가지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식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학교](#))

하지만 부정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낙인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나 가정 문제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 언어로 말하기 전에 교사 회의, 지원계획, 외부 연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만함, 무기력, 등교 거부, 관계 갈등이 “학생의 삶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빠르게 병원, 진단, 약물, 특수교육, 학폭·생활지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것인가, 나를 관리하려는 것인가?”

학교상담법이 없으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에게 도움의 언어가 아니라 관리의 언어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6. 학부모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학부모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학교가 아이의 어려움을 더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부진, 심리·정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학교폭력 피해, 진로 혼란이 함께 있을 때, 학부모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연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안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학·전편입학,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방과후·돌봄 등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아이스](#))

그러나 학부모가 불안해할 지점도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가.

상담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가.

학교 회의에서 아이의 가정 문제나 내면 정보가 공유되는가.

지원이 곧 병원 연계나 특수교육 권유로 이어지는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협조 학부모”로 기록되는가.

아이의 어려움이 성장 과정으로 읽히지 않고 위험 신호로만 해석되는가.

홍윤이 사례에서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다른 것은 알지만, 그 다른 점이 곧 병명이어야 하는가?”

이 불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상담 절차, 정보 공유 범위, 동의권, 거부권, 의료 연계 기준, 학교 안 상담 선행 원칙에 대한 분명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상담법의 영역입니다.

7. 핵심 문제: 법은 “지원”을 말하지만, 현장은 “수행 주체”를 묻고 있다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논란의 핵심은 법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 누가 학생을 발견하는가?
- 누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석하는가?
- 누가 학부모와 소통하는가?
- 누가 회의를 준비하고 기록하는가?
- 누가 외부기관과 연결하는가?
- 누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가?
- 누가 민원과 책임을 감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거나 흐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 업무 담당 교사, 상담교사에게 일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통합지원”이 아니라 “통합업무”가 됩니다.
학생은 “지원받는 학생”이 아니라 “관리되는 학생”이 됩니다.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담교사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계와 위기관리 담당자”가 됩니다.

8. 그래서 학교상담법이 필요한 지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학교상담법입니다.

학교상담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부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보완법입니다.

학교상담법은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생활 장면을 관찰하는 1차 교육상담자다.
상담교사는 검사·연계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과 관계 회복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체다.

학교관리자는 민원과 책임 구조를 공식적으로 말아야 한다.

교육청은 전담 인력, 슈퍼비전, 법률 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상담 기록과 학생 내면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연계는 실제 위기와 학교 안 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을 구분해야 한다.

공동 사례회의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무엇을 먼저 읽고 시도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지원망입니다.

학교상담법은 그 지원망 안에서 학생이 낙인찍히지 않고, 교사가 혼자 떠안지 않고, 상담교사가 행정 담당자로 축소되지 않도록 만드는 상담 운영법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현장 반응은 바로 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